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審 査 報 告 書

2007. 5. 22.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11일 영등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(2007.5.18)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박 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 ·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 삭제 (안 제3조 제1항 제1호)
- “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” 을 “재산등록사항” 으로 개정 (안 제3조 제1항 제3호)
-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변경 (안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)
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“구 소속 공무원” 은 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” 으로 하고
“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” 은 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 으로 변경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전문위원 김완섭)

- 이 조례의 개정은 투명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「공직자윤리법」 제2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함.
- 수정의견은 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제2조 제1항 및 제2항,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띄어 쓰고, 제3조 제1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“관계법령”을 “다른 법령”으로 정비하고, 제4조제2항 중 “임기내”를 “임기 내”로하고 “재직중”을 “재직 중”으로 띄어 쓰며, 제4조제3항 중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 정비하며, 안 제6조 제2항 단서 중 “3분의 2 이상”을 “3분의 2 이상”으로 띄어 쓰고, 제6조 제2항 제4호 중 “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”를 “법 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”로 정비하며, 제8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 안에서”로 띄어 쓰며, 안 제10조 중 “법 시행령”과 “법 시행규칙”은 이 조례에서 약칭한바 없어 현행을 띄어쓰기만 하여 “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”과 “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하고 “부 칙”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”부칙“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임.

4. 審査結果：原案 可決

※ (자구정정내용 첨부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□ 자구정정 내역

구분	자구정정 전	자구정정 후
제명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<u>운영</u> 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<u>운영 등에</u> 관한 조례
제2조제1항 및 제2항	<u>각호</u>	<u>각 호</u>
제3조제1항	<u>각호</u>	<u>각 호</u>
제3조제5항	<u>기타</u> 이 조례 또는 <u>관계법령</u>	<u>그 밖에</u> 이 조례 또는 <u>다른법령</u>
제4조제2항	<u>임기내</u> ----- <u>재직중</u>	<u>임기 내</u> ----- <u>재직 중</u>
제4조제3항	<u>잔임기간으로</u>	<u>남은 임기로</u>
제6조제2항	<u>각호</u> ----- <u>3분의 2이상</u>	<u>각 호</u> ----- <u>3분의 2 이상</u>
제6조제2항 제4호	법 제24조 <u>내지</u> 법 제29조 <u>에</u>	법 제24조 <u>부터</u> 법 제29조 <u>까지</u>
제8조	<u>범위안</u>	<u>범위 안</u>
제10조	<u>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법</u> <u>시행규칙</u>	「 <u>공직자윤리법 시행령</u> 」 및 「 <u>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</u> 」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5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 삭제 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“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”을 재산등록사항“으로 개정 (안 제3조제1항제3호)
-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변경 (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
 -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“구 소속 공무원”은 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”으로 하고 “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”은 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생략
 - 생략사유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직자윤리법”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영등포구의회”로 하고, 동조제3항 중 “구의회”를 “구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동항제2호 중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하며, 동항제3호 중 “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”을 “재산등록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구 소속공무원”을 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”으로 하고, 동항제2호 중 “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”을 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출석위원”으로 하고, 동항제1호중 “법 제8조제6항”을 “법 제8조제7항”으로,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하며, 동항제4호중 “법 제23조”를 “법 제24조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법시행”을 “법 시행”으로, “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조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쓰고,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각각 띄어 쓴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직자윤리법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직자윤리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 (구성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2인의 위원은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</u>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의원 1명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(이하 "구소속공무원"이라 한다)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 ② (생략)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구의회</u>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영등포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구의회의장</u> -----.
제3조 (기능) ① (생략) 1.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	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2. <u>법 제8조제11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. <u>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</u> 심사 그 결과의 처리 4. (생략) 5. (생략) ② (생략) 1. <u>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 2. <u>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 제6조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생략)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<u>재적위원</u>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1. <u>법 제8조제6항</u>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<u>법 제8조제11항</u>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. ~ 3. (생략)	2. <u>법 제8조제12항</u> ----- 3. <u>재산등록사항</u>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<u>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</u> ----- 2. <u>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 ----- 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. ----- <u>출석위원</u> ----- -----. 1.<u>법 제8조제7항</u> ----- ----- <u>법 제8조제12항</u>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4. <u>법 제23조</u>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(생 략) 1. ~ 3. (생 략) ④ (생 략) 제10조 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<u>법시행</u>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공직자윤리법시행령</u> 및 <u>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	4. <u>법 제24조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준용) ----- ---- <u>법 시행</u> ----- <u>법 시행령</u> 및 <u>법 시행규칙</u>----- -----.